

## 學術著作物의 著作權

법과대학 黃 迪 仁

문예·학술분야의 저작물에는 저서와 논문이 있다. 이중 저서는 e-Book의 형태로 디지털저작물로 CD로 만들거나 또는 온라인화하여 이용되고 있다. 논문의 저작물유통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I. 論文의 온라인화

현재 국회도서관에서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각 대학에서 수여한 석·박사학위의 논문을 대부분 입력(入力)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은 모니터로 열람·출력해 받을 수 있으며, 대학도서관에서도 학위논문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학위취득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받아서 서울대학교도서관 기타 대학도서관은 이를 입력하여 도서관 이용자는 저작권료 없이 종이값만 지급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업체도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료로 출력해 주고 있다.<sup>1)</sup> 이들의 업체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 OSP)라고 한다(저작권법 102~4조). 온라인화의 장점은 논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또는 연구실에서 국내외 논문을 컴퓨터로 신속·용이하게 검색·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1) 미국에서는 ProQuest(300 North Zeeb Road, P.O. Box 1346, Ann Arbor, Michigan 48106-1346, U.S.A; [Http://www.il.proquest.com](http://www.il.proquest.com))가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제조자라고 추측된다. 미국의 모든 논문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디스켓 형태로 소장·판매하고 있다.

점, 논문을 저장·보존하는데 USB 등에 저장하면 편리하고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휴대가 편리한 점 등이다. 반면에 단점은 저작물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모니터 이외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OSP가 신고하지 않는 한 자기의 저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포착하기가 어렵고, 저작물이 사용자에게 의해서 표절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작권보호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이다.

## II. 論文의 著作權

저작재산권(著作財產權)은 여러 지분권(支分權)이 뭉쳐져 있는 권리의 다발(束)로서, 원 저작물이 창작되어 나온 후에, 이에 터전을 두어, 저작자가 저작권이용자<sup>2)</sup>에게 이용권(利用權)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 이용권에는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7개 권리가 있다.

### 1. 複寫權<sup>3)</sup>(Reprographic Right)

(1) 2000. 1. 12 현행 저작권법 제30조가 개정되기 전

논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복사기(複寫器)로 복사하더라도 복사물 사용자의 개인적 용도로 소규모로 사용하면 사적사용(私的使用 - private use)이라 하여 논문의 저작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자는 자유로(곧 저작권사용료 지급 없이)이 사용할 수 있었다.

---

2)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자, 즉 출판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방송사 등을 말하고, 저작물의 사용자(User)는 소비자를 말한다.

3) 복사권은 복제권 중의 하나이다.

(2) 2000. 1. 12 저작권법 제30조 개정 후

제30조 단서(但書)가 추가되어,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사적사용’에서 제외되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복사권(複寫權)을 가지게 되었다. 즉, 사용자는 복사지 종이 값 외에 필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면당 5원)를 지급하여야 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사용자가 논문의 저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 운용자(복사점) →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사권협회라 함)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이라 함) → 논문의 저작자의 경로로 논문의 저작자에게 분배한다.

이 때 복사권협회는 복사기 운영자로부터 포괄징수(包括徵收 - Blanket System)한다. 즉, 사용자가 누구의 논문을 얼마만큼 복사했는지 복사권협회는 알 수가 없으므로, 복사권협회에서는 2년에 1회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한다. 즉 협회는 복사기 운용자에게 의뢰하여, 복사한 논문, 가령 논문을 복사할 때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잡지의 표지를 함께 복사하여 협회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확하고, 널리 어떤 분야의 누구의 책이 복사되었는지 정도밖에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복사권사용료는 포괄분배(包括分配)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의 VG-Wort<sup>4)</sup>는 단행본의 재판을 낼 때마다 일정한 분배금을 책의 저자에게 지급한다(즉, 복사의 경우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저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을 내는 책은 복사도 많이 한다는 추정 하에 단행본의 재판을 발행할 때 복사권료의 포괄분배를 한다). 앞으로 문저협에서도 복사권협회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책의 재판을 낼 때마다 협회의 회원에게 분배할 가능성이 많다.

---

4) ‘VG. Wort’는 ‘Verwertungsgesellschaft Wort’의 약자로서, 독일 뮌헨에 있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말한다.

## 2. 傳送權<sup>5)</sup>(Transmission Right)

이것은 도서관 등 D/B 제작자가 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전송(傳送)하였을 때에 논문의 저작자가 사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18조). 이 권리는 2000. 1. 12 개정된 저작권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었다가 2006. 12. 28 공중송신권이 신설되면서부터 전송권은 공중송신권 중의 하나로서 규정되게 되었다. 전송권에는 다음 두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up-load)할 때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도서관(데이터베이스제작자; D/B 제작자 - 저작권법 91-98조)이 저작물을 입력할 때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논문의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일본저작권법 63조에서는 이를 送信可能化權이라 한다).

### ② 저작물을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때 저작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학회지 등에 게재된 논문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컴퓨터로 검색하여 원하는 논문을 모니터로 읽기만 하는 경우(이를 '화면현시' - 스트리밍 - 라 함)에는 저작권사용료로 파일 당 20원을 지급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면당 저작권료 5원을 지급하고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지급한 저작권료를 논문의 저작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복사했을 때의 전달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복사와 전송의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① 도서관은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모니터로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출력할 수도 있다(면당 5원)(저작권법 31조 2항). 또한 도서 등이 발

---

5) 전송권은 공중송신권에 속한다.

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이하 도서관 등이라 함)의 총수는 전국에 약 1,500개인데, 그중 복사권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649개의 도서관 등은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이용자는 거기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열람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다.

② 도서관 등은 도서를 입력·다른 도서관 등으로 전송·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데에는 도서의 저자로부터 저작물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입력하고 온라인화하여 다른 도서관과 연계하여 저작물을 사용케 하고 있다(저작권법 31조 1항). 이 경우에 저작권사용료의 액수의 결정은 - 복사의 경우처럼 저작권단체(협회)와 복사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렴하다. 따라서 앞으로 저작물사용자는 도서관에 입력된 도서(국립중앙도서관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도서 및 학위논문 13만 권을 입력)와 논문(국회도서관에서도 학위논문을 모두 입력함)을 도서관에서 컴퓨터로 검색하여 저렴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에 학회지는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이고, 대학교재 등 단행본도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것은 시장성을 많이 상실할 것으로 추측된다.

③ 데이터베이스화된 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의 분배는 '복사'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분배가 아니라 개별분배이다. 즉, 도서관 등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출력(다운로드)할 때에는 저작물에 따라 과금(料金)하고 그 저작물의 이름과 필자의 이름을 복사권협회에 통보하면서(따라서 개별징수) 저작권료<sup>6)</sup>를 협회에 지급하고, 복사권협회는 직접 저작자에게 분배한다(따라서 개별징수·개인별 분배이다). 도서관으로부터 받는 저작권사용료의 액수는 다음 복사권협회의 표(III, 2)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

6) 이용자가 출력한 다음 해의 4월까지 도서관은 보상금을 센터에 지급한다.

### III. 分配方法

#### 1. 복사권의 경우

##### 1) 학회(學會) 및 학회회원에 분배(分配)하는 경우

복사권의 경우는 포괄징수·포괄분배의 형식을 취한다. 즉, 복사권협회가 복사점으로부터 징수한 복사권사용료 중 2004년도분 5,000만 원을 문저협에 2007년에 처음으로 보내 왔으므로 문저협에서는 협회에 가입한 학회(學會)에 저작권료로서 2007. 5에 10만 원씩 분배하였다. 협회에 가입한 학술회원 개인에 대해서는 36,140원씩을 지급하고, 제출한 저작물목록을 기준으로 업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추가하였다. 2005년도 복사권사용료는 2008년에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 2) 책의 재판(再版)을 낸 경우의 분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독일에서는 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취하고 있지 않다.

#### 2. 전송권의 경우

이 경우에는 저작물은 출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작자와 저작물명이 명시되므로 특정징수·특정분배의 형식을 취한다.

#### IV. 著作權團體

##### 1. 韓國文藝學術著作權協會(Korean Society of Authors – KOSA)

이 단체는 1984. 5. 19 문인과 교수 65명이 모여 저작자의 단체인 '한국저작인

표 1.

연 도	회 원 수		총징수액	분배액	수수료
	개인	단체			
1984	150	1	1,763,130	.	-
1985			2,448,874	.	-
1986	320	1	4,758,458	.	-
1987			2,458,769	.	-
1988			6,944,387	.	-
1989	439	7	16,913,272	.	-
1990	616	8	15,530,000	12,955,500	58,835,560
1991	675	9	120,007,500	117,693,500	70,165,100
1992	732	11	116,179,620	74,970,010	101,056,328
1993	770	14	628,366,560	225,483,160	201,467,408
1994	829	23	465,842,202	326,157,850	286,345,996
1995	859	26	255,032,214	90,228,782	195,793,687
1996	906	26	344,309,452	138,054,803	159,043,908
1997	1,001	27	564,857,172	244,954,066	187,785,655
1998	1,105	29	754,805,979	283,375,460	236,992,785
1999	1,162	29	1,034,770,929	325,281,236	161,016,843
2000	1,214	43	1,949,327,039	867,739,832	296,919,025
2001	1,406	49	1,928,336,621	901,742,538	230,731,309
2002	1,567	52	2,067,387,077	1,514,741,036	306,663,605
2003	1,542	56	1,789,514,237	1,220,819,827	272,896,239
2004	1,692	57	1,874,237,111	1,533,268,896	357,765,505
2005	1,798	57	1,998,804,377	1,719,042,254	332,347,144
2006	1,850	59	2,040,839,336	1,682,904,537	399,524,613

협회'를 결성하고 1988. 7. 13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이때 명칭이 '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회'로 바뀌었다. 1989. 3. 16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문예저작물과 학술저작물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집중관리단체<sup>7)</sup>가 되었다. 회원 수는 1,909명(개인: 1,850명(그 중 교수는 1,100명), 단체: 59)이다(2007. 12 현재). 저작권자가 이 단체에 가입하여 저작물을 신탁하면 이 단체가 이용자에게 사용허락을 해 주고 저작권자는 사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06년 연간 저작권사용료의 징수실적은 약 20억 4천만 원이다.

## 2. 韓國複寫傳送權協會(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 Association - KRTRA)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2000. 7. 1 복사권과 전송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하기 위하여 저작자단체(문저협 등)와 출판사단체(대한출판문화협회 등)가 주축이 되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2007. 10. 11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복사권협회에서는 표 2와 같이 징수액이 협회운영비보다 적기 때문에 그동안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단체에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문저협에 복사권사용료는 2004년도분 5,000만 원을 분배하여 왔고, 2005년도분은 2008년에 5,000만 원을 분배할 예정이다. 도서관보상금(주로 전송권사용료)은 2004년도에 1,91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05년도에는 3,400만 원을 징수하여 167,860원을 분배(분배율 0.49%)하였다. 2006년도에는 도서관 649개 도서관 중 400여 곳부터로만 징수하였다.

---

7) 저작권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란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저작권의 신탁을 받고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저작권사용료를 받아 회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표 2.

연도	복사이용허락계약				전송이용계약 (도서관보상금)
	복사 업소		기업체, 관공서		
	계약처수	징수액	계약처수	징수액	
2000	23	2,935,177	0	0	0
2001	625	126,302,379	0	0	0
2002	909	221,892,000	0	0	0
2003	949	322,781,000	0	0	0
2004	896	438,211,000	1	327,950	19,174,286
2005	1000	311,539,030	3	222,300	34,274,597
2006	1076	284,011,710	7	2,456,020	34,934,638

## V. 現行 制度의 問題點

### 1. 대학도서관의 학술저작물 무상사용

현재 대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한 대학도서관은 112개인데 그 중 60개 대학도서관만이 복사권협회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교에서는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대학이 碩·博士 論文의 著者의 학위논문의 저작권을 학위취득자로부터 양수 받아서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서울대학교도서관 기타 대학도서관은 학위논문을 입력하여 도서관 이용자는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없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위수여와 필자의 저작권취득은 별개의 문제이며, 대학이 학위를 수여하면서 이를 연결지어 학위취득자의 저작권을 양도받고 결과적으로는 필자의 저작권을 박탈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지나친 월권행위이다. 대학이 학생의 논문의 저작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대학도서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기관은 당연히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는 조항을 조속히 삭제하여야 한다.<sup>8), 9)</sup>

## 2. 도서관 등의 저작권제한(저작권법 31조)

원래 전송권(傳送權)은 2000. 1. 12 당시 저작권법 제18조의 2의 신설로 새로 규정되었다. 전송권의 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up-load)할 때 저작자가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일본법 63조의 送信可能化權)와 저작물을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때 저작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제18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단행본 12만 권을 입력하였다. 그 후 2003. 5. 27 저작권법 제31조를 개정하여 동 1항은 “... 도서관은 ...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 ...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 도서 12만 권을 입력한 것을 합법화하였다. 나아가서 동 3항은 도서관에서 보관중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도서에 관하여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전국 649개의 공공도서관은 면당 전송권사용료 5원 만 내고<sup>10)</sup>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고 있다. 그 후 도서관이 복사권협회에 지급한 도서관보상금(전송권사용료)이 2004년에 1,917만 원,

- 
- 8)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학회로부터 게재논문을 pdf 파일로 받아 1,435종으로 Korea Citation Index(KCI)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사용자(User)에게 무료로 이용케 했으나 무상사용은 최근 시정되었다.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논문을 무료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
  - 9) 각본(脚本)의 온라인화에 관하여 추가한다.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대본을 쓴 경우에는 대본을 온라인화하여 위원회 소속인 예술정보자료관에서 무료로 출력받을 수 있다. 또는 공연을 비디오로 수록된 경우에는 복사는 안 되고 스트리밍만 가능하다. 작가는 희곡작가협회 저작권분과위원회로부터 흥행된 경우 40~50만 원의 저작권료만을 받고 있다.
  - 10) 도서관에서 출력하는 경우에 저작권료가 5원이더라도 종이값·출력비 등 모두 합산하면 면당 40원이다. 또한, 도서관이라도 책 전체의 5%로만 출력이 가능하고 책 전체의 출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5년에 3,427만 원, 2006년에 3,493만 원에 불과하였다.<sup>11)</sup> 많은 도서는 발행 후 5년이 지나도 아직 시장성(市場性)을 갖는 것이고,<sup>12)</sup> 이렇게 하면 도서관의 전송이용자는 늘겠지만 책은 더욱 안 팔리고 복사·전송은 가속화되어 저작이나 출판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위축될 것이다. 저작권·출판권은 사권(私權)인데, 저작권법 제31조가 이러한 정도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違憲)의 소지마저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에 없다.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이용형태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OSP 업체는 한국학술정보(주)(시장점유율 60%), (주)누리미디어, 교보문고(이상 3개 업체의 합친 시장점유율은 80%이다), 한국학술정보원, 학지사, 학술교육원의 3업체는 비교적 작은 업체이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있다. 이러한 업체가 현재 취하고 있는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을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유료로 다운로드해 주는 경우

② 학술지(e-Journal) 및 단행본(e-Book)을 도서관에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

#### 1) 한국학술정보(주)

이 업체는 1,300개 학회의 학회지를 입력하고 naver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논문을 유료로 출력해 주고 있다. 또한 e-Book도 도서관에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학회에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필자에게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복사권협회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2007년 봄부터

11) 복사권협회에서는 3,000원 이상일 때에만 저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분배받는 교수의 수는 현재 대단히 적다.

12) 논문은 과학·기술의 연구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나, 논문의 수명은 단행본과는 달리 짧으며, 평균하여 3년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앞으로 필자 개인에게도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봄에 학회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에는 학회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25%를 학회에 지급하고, 학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학회에 15%, 필자에게 10%를 지급하기로 복사권협회와 합의하였다. 또한 지급하기로 합의된 4억 원 중 2007년 10월부터 우선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 2) (주)누리미디어의 경우

2000. 11. 14. 문화관광부로부터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 2001. 4. 10. 복사권 협회를 통하여 문저협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의 신탁을 받아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 업체는 400~500개 학회의 학회지를 입력하고, 2002. 12. 31. 교보문고와 국내학술자료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교보문고와 누리미디어는 여러 학회와 전자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로 누리미디어가 검색사이트(www.dbpia.co.kr)를 운영하여 논문의 유상 출력을 하고 있다.

복사권협회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서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고소사건은 복사권협회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으나, 서비스금지가처분소송은 2007. 4. 24. 서비스금지가처분을 내릴 만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처분청구는 기각 결정되어, 현재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3) 한국교육원의 경우

한국교육원은 311개 학회의 e-Journal을 1년간 도서관에 사용케 하면서 저작권사용료로서 800만 원을 주고, 1학회 당 6,431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는 것

표 3.

기관명	저널수록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공학회수	요율	저작권료
서울대학교	창간호~현재	2007. 7. 1~12. 31	600만 원	311	25%	4,823원
동덕여자대학교	창간호~현재	2007.1.1~12.31	800만 원	311	25%	6,431원
청주대학교	창간호~현재	2007.1.1~12.31	800만 원	311	25%	6,431원
						167,685원

은 저작권 침해에 가깝다.

#### 4. 복사권협회의 징수액의 저조

복사권협회의 연간 징수액이 저조한 주 원인은 징수방법이 계약제(Voluntary System - 저작권법 30조)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사기운영자나 기업업체는 복사권협회와 ‘저작물복사이용허락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7개국의 법제와 같이 부과금제(Levy System - 독일저작권법 54조)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5. 民間出版社가 온라인판매의 경우 판매部數推定

(1) 현재 논문 또는 도서의 저작자가 민간출판사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sup>13)</sup>)와 전자출판계약을 체결하여 e-Book 또는 e-Journal을 발행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판사들이 몇 부의 도서를 독자에게 출력했는지 저작자로서는 알 길이 없으므로, 전자출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종이로 된 책: 학회지이든 단행본이든 일반도서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판권(版權)표시를 책 표지 뒤에 인쇄하지 않고 책 끝에 두도록 하여, 저자의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여야 출판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판 부수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58조 3항은 인지첨부의무(印紙帖付義務)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지첨부가 잘 이행되지 않아 종이책을 발행하였을 때에도 몇 부를 발행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e-Book 발행의 경우에는 더욱 발행부수 확인이 어렵게 되고 있다.

---

13) D/B 제조자와 OSP는 개념상 다르지만, 양자는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 6. 學會誌의 非賣品 表示

현재 모든 학술단체(학회)는 비영리사단법인 내지는 비영리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행하는 학회지는 판권지(版權紙)에 '비매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비매품 표시가 되어 있는 학회지의 논문은 모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였다(저작권법 2003. 4 개정 전). 학회지의 비매품 표시는 저작권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매품 표시가 있는 학회지의 논문이라도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은 필자가 보유한다고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예: "© 2007"으로 저작권 표시).

## 7. 著作權團體의 會員 加入

현재 논문의 필자인 대학교수로서 문저협(저작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교수는 1,100명이지만, 저작권협회가 가입을 권고하여도 교수들은 가입하는데 소극적이다. 저작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저작권을 신탁하여야만 복사권이든 전송권이든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이 도용(盜用) 등 침해당하였을 때 소송·고소 등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따라 각각 학회에 가입하고, 학회에서는 회원이 쓴 논문은 편집하여 학회지를 발행할 때 학회지에 게재되는 회원의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일률적으로 양수받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의 저작권의 양도여부는 회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다. 문저협의 단체회원 59개에는 학회인 경우가 많다. 교수가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고 학회가 저작권협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면 논문의 저작자는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8. 출판권설정계약(출판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이것은 저자와 출판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학교수가 출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 ① 가급적 매절계약을 피하고(저작권을 잃어버리기 때문)
- ②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저작권법 60조 1항에는 3년)
- ③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에 날인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문저협의 '표준계약서'(종이 책을 출판하는 경우와 e-Book을 출판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I. 맺는 말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자·사용자·사회의 3자의 이익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치우치며 저작물이용자도 저작권사용료를 정확히 지급하지 않아 저작자의 권익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학회·연구기관에서도 학위취득자·회원·집필자의 저작권의 귀속을 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은 사권(私權)이므로 그 귀속은 소속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저작권사용료는 저작자의 노임이며, 노임 없이는 저작물의 재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헌법 제22조 2항도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은 생산되지 않는다. 저작권존중의 풍토가 아쉽다고 아니할 수 없다.

Prof. Seokin Huang  
Copyrights of Academic Works